

우) 42046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안동동)  
TEL (053)602-7113 / FAX (053)957-3506  
총무부 장 권 민

# (주)한국기술인더블고프텔

문서 번호 : 제 2018 - 016 호

시행 일자 : 2018. 05. 16

수 신 : 수신처 참조

장 조 : 관양 · 조리게영 학교장님

제 목 : 2018년도 하계 산학협력심사 안내

1. 귀 대학교의 우수한 발전용 기원 드립니다.

2. 양호빌은 대구 및 호남로서 지역 경제문화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구 · 경북지역 대학교의 산학교육로 산 · 학간 정보교환, 협력사업 지원 및 학생들에게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동안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무 지식을 축적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미래에 유망한 관공인으로 될 수 있도록 양호빌 회를 제공하고자 하니 학교장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

가. 연수기간 / 4주간

- 1차 : 2018. 07. 02(월) ~ 07. 27(금)

- 2차 : 2018. 07. 30(월) ~ 08. 24(금)

나. 연수대상 : 해당학과 남 · 여 학생

다. 신청방법 : 양호빌 현장실습 신청서 및 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하여 총무팀으로 발송 및 이메일로 첨부

라. 신청기한 및 신청비 선반 절차

1) 신청서 제출기한 : 2018. 05. 31(목)까지

2) 호텔 방문(면담) 일자 : 2018. 06. 25(월) ~ 06. 29(금)/5일간(17:00시 전까지

방문)



국립보건연구원 (NIH) 2018년 5월 10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 수 신 처 >

참 : 1. 2018년도 하계 원장실습 및 실습생 인적사항 신청서 각1부  
2. 원장실습 협약서 1부, 공.

- e-mail : swimming@inter-burgo.co.kr

- FAX : 053-957-3506

- 연락처 : 053-602-7141 (담당자 우수영 주영)

부. 공의사학 연락처

공의(주)지은

- 주 5일제 / 1월 8일(휴게기간 1시간 제외) / 수요일 수료생 및 실습생(퇴직)

마. 근무시간 및 수료생 지원사항

3) 주휴 신청서 제출 학생에 대하여 실습 가능여부 개별 통보

\*원사 홈페이지(하단 채용공고) → 원장실습생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원사용 / 사전포함)을 지원하여 받음

-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위 방문 기간 중 호텔 숙박에 수료생 1부(자사용)







※ 강, 과, 법, 의, 지인, 권, 예는 반드시 적인 또는 본인도장을 사용하여야 함  
※ 용, (신승생)란이 부록하면 추가해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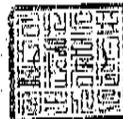
(직인)

주 소 :  
학 교 명 :  
출 장 :

면 (대과교)

①	성명 및 년(사명)	주 소	학과(전공)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등 (신승생)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회 사 명 : (주)블루온세상인력블로그호텔  
대표이사: 서 기 수

갑 (기업기관)

201년 월 일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년인 한 후 '갑', '을',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수료증명서) 갑은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2) 협약 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제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1)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해지일 7일전에

제9조(협약실습 협약의 해지)

'병'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갑'은 '병'의 편익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